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1996. 12.

김 규 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요약

북한은 최근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체제유지를 담보받고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냉전이후 시대 세계전략인 참여와 확대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북한간에 합의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문이 미국과 북한간 관계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인식하에,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방향을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대적성국 관계개선 사례를 경제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및 완화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미국의 대적성국 경제제재

경제제재는 국가간의 교역을 통제하고 자본의 이동을 규제함으로써,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취하는 대외정책을 의미한다. 한편 유엔이 중심이 되는 집단적 경제제재는 유엔헌장 7장 41조상의 비무력적 강제조치에 해당된다. 경제제재의 종류를 성격별로 분류하면 대상국의 행동을 유

도하기 위한 보상측면의 긍정적 제재(positive sanction)와 대상국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처벌측면의 부정적 제재(negative sanction)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후자인 부정적 제재를 의미한다. 한편 경제제재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실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무역통제조치와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본통제조치를 비롯하여 항공기 및 선박의 취항과 이·착륙을 중단하는 교통·수송통제조치와 통신망의 단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경제제재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1914~90년 기간 중 취해진 116건의 사례 중 41건만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제재의 성공률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냉전이후시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제재는 1990년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1991년의 구유고연방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 및 1993년의 대앙골라 경제제재가 유엔을 중심으로 취해진 바 있다.

미국의 대적성국 경제제재 완화와 관련 미·베트남 관계개선 사례를 분석하면,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은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하에서 수립된 4단계 항해도(road-map) 접근방식을 클린턴 행정부가 이행하는 과정을 거쳐 이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 항해도 접근방식은 베트남의 각 단계별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미국이 대베트남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이었다.

미국은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에 있어 전쟁포로 및 실종자

(POW/MIA) 문제의 해결 및 캄보디아에서의 베트남군 철수, 캄보디아 정부 수립을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 추진에는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손상을 우려한 미국 기업가들의 대베트남 경제 관계 정상화 압력은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및 완화 현황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가로 분류하여 대북관계를 규제하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① 북한이 테러국가로 분류되어 적용받고 있는 조치, ②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적용받고 있는 조치, ③ 공산주의 국가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등이 있다.

미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완화시킨 바 있다. 즉 미국은 1989년 해외자산 규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 내용의 일부 개정을 통해 체육, 학술, 문화 등 비상업 분야에서의 미국 여행사에 의한 개인 또는 단체여행 주선을 허용하였고, 수출행정령(Export Administration Act)의 일부 개정을 통해 식량, 의약품, 의료기재 등 인도적 물품의 대북한 수출을 허용하였다.

이후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타결한 기본합의문의 이행구도에 따라 1995년 1월 20일 대북한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 및 정보 관련, 미국과 북한간에 전화통신 연결에 관련된 거래, 개인적 여행의 신용카드 사용 및 기타 여행 관련 거래를 허용하고, 언론인들의 지국 개설도 허용한다.

둘째, 재정 거래 관련, 미국에서 시발되거나 종결되지 않는 거래를 결제하기 위하여 미국 은행체계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셋째, 무역 거래 관련, 미국 제철업소에서 내화물질로 사용되는 마그네사이트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를 허용한다. 그리고 경수로 사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참여, 대체 에너지 공급, 폐연료봉 해체 등 미국과 북한간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법규에 맞추어 사안별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는 미국의 국내법 개정이나 의회의 동의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한 초보적 단계의 조치로 평가되며, 미국의 포괄적 대북한 경제제재는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다.

3.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전망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 과정과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은 해결이 어려운 장애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무부의 정규요원에 의한 정상적 채널보다는 의회나 분야별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 협상에서도 실무적 문제와 중요 정치적 문제가 구분되어 실무적 문제는 국무부의 정규요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협상의 고비마다 돌출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안의 해결은 사안별 전문가나 의회의 인물을 기용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미국은 적대국과 관계개선 사안별 중요도를 우선순위에 따라 설정하고, 상대국의 사안별 약속이행이 확인된 후 다음 단계로 격상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서는 북한 핵개발의 동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북한이 핵개발 동결에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셋째,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의 경우 베트남의 직접적인 분쟁상대인 캄보디아와의 갈등 불식, 즉 캄보디아에서의 베트남군 철수가 중요변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북한의 대남한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과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모색하지 않는 한,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의 속도와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대베트남 및 대북한 관계개선 추진과정에서 다

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즉 미국은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는 실질적 이득은 거의 없는 반면, 관계개선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이익(positive interest)의 확대에 주력하기보다는 부정적 이익(negative interest)의 축소에 주력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는 ① 기본합의문의 성실한 이행, ② 실종미군 및 미사일 회담의 원만한 진행, ③ 북한의 4자 회담 수락 및 추진, ④ 남북관계 개선 등 미·북한간 현안의 해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의 수준과 폭은 위와 같은 미·북 관계개선의 다양한 조건의 충족 여부와 대베트남 관계개선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추가 완화는 북한의 약속 이행과 연계된 단계별 추진 원칙과 대북한 부정적 이익의 점진적 최소화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단계로 기본합의문 명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부분적 완화조치는 이미 취해진 상태로 미국과 북한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었다. 그 결과, 미국 기업의 대북접촉이 자유스러워졌으며, 인도적 목적에 의한 북한에 대한 기부금 모집 및 전달이 허용되었다. 한편 미국의 AT&T 전화회사는 1995

년 4월 북한과의 전화를 연결하였으며, 또한 미국 재무성은 북한의 미국내 동결자산을 부분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간의 무역은 아직도 미국 재무성의 허가사항이므로 한정된 액수에 머무르고 있다.

제2단계로 제한적 경제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미국의 제2차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의 4자회담 수용 및 미·북한간 실종미군과 미사일 회담의 진전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무역관계를 제약하는 제반 제재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조치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산동결 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대미 물품 수출시 수출물품의 압류 등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에게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이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대북한 수출 및 수입 허가제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미국과 북한간 무역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은행거래 및 선박의 입출항 등의 자유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단계로 경제관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미국의 제3차 경제제재 완화는 기본합의문의 이행과 관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한 경수로 공급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시점, 즉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의 미국의 추가적 경제제재 완화는 대북 경수

로 공급사업, 북한의 미사일수출통제기구(MTCR) 가입 및 남북 관계 개선 등의 실질적 진전이 이룩될 경우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일련의 제한도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적 개방·개혁이 진전된다면, 미국은 대북한 직접투자를 포함한 북한과의 전면적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단계는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단계로서, 미국이 전술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어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관계정상화 시점에 취해지는 경제제재의 전면해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간 경제관계가 정상화되어 모든 무역 및 자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미국은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관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역기구에의 가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측의 기대와는 달리 진전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는 미·북한간 현안의 진전과 연계되어 있으며, 동시에 북한은 경제난 타개가 한시라도 급한 사정인 반면 미국의 대북한 경제이익은 거의 전무한 관계로, 미국 입장에서는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와 남북한관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보다 큰 폭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① 일본의 대북 경제관계 확대, ② 북한의 국제적 신용도 제고, ③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의 진전, ④ 미국의 대북압력에 의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확대, ⑤ 북한내 개방파의 입지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건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경제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재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고비마다 미국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대북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가 보다 폭 넓게 추진될 경우, 북한은 일본 및 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 확대를 기대하고 단기적으로는 남북간의 직·간접적 경제관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게 되고, 북한이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이용한 경제난 타개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남북 경제관계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가 단계적·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과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단계별로 연계시키는 단·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 I 장 서 론	1
제 II 장 미국의 대적성국 경제제재: 이론 및 사례	3
1. 이 론	3
2. 사 례: 미·베트남 관계개선과 경제제재 완화	10
제 III 장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와 관계개선 현황	15
1.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현황	15
2.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완화과정:	
대북 핵협상 중심	19
가. 1, 2단계 고위급 회담	20
나. 3단계 고위급 회담	24
다. 기본합의문	26
3.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완화 내용	29
가. 기본합의문 이전	29
나. 기본합의문 이후	31
제 IV 장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전망	37
1.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의 시사점	37
2.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의 전제조건	41

가. 기본합의문 이행	42
나. 실종미군 및 미사일 회담	43
다. 4자회담	45
라. 남북관계 개선	47
3.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전망	48
가. 제1단계: 기본합의문 명시사항 이행	48
나. 제2단계: 제한적 경제관계	49
다. 제3단계: 경제관계 확대	50
라. 제4단계: 경제관계 정상화	51
제 V장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52
1. 북한의 개방에 미치는 영향	52
2.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54
3. 한국의 대응	56
참고문헌	59

<표목차>

<표 1> 부정적 경제제재의 예	6
<표 2> 긍정적 경제제재의 예	8
<표 3> 미국의 對북한 제재조치	18
<표 4> 미국의 對北제재조치 현황	33

제 I 장 서 론

북한은 최근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체제유지를 담보받고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로 조성된 동북아시아의 긴장상태는 현재 미·북한간 기본합의문의 타결 및 경수로 지원 사업의 진행으로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핵문제의 국제적 속성으로 인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한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현상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냉전이후시대의 세계전략인 참여와 확대의 원칙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함과 동시에 북한의 급속한 붕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북한체제를 연착륙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은 탈냉전시대의 국제적 조류를 활용하여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한국은 양국과의 수교이후 경제교류는 물론 군사·안보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상대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축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북한에 대하여 냉전시대에 제공하였던 경제 및 군사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에 참전하여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으며, 종전이후에도 북한에 의하여 자행된 1968년의 미국 정보함 푸에블

로호 납치사건과 1969년의 미국 정찰기 격추사건 및 1976년의 도끼 만행사건 등으로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이 자행한 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1988년부터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통하여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포함한 기본합의문에 합의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과 북한간에 합의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합의문이 미국과 북한간 관계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인식하에,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방향을 미국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미국의 향후 조치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미국의 대적성국과의 관계개선 사례를 경제제재완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미·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및 완화 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의 방향을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 II 장 미국의 대적성국 경제제재: 이론 및 사례

1. 이 론

경제제재는 국가간의 교역을 통제하고 자본의 이동을 규제함으로써,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취하는 대외정책을 의미한다. 한편 유엔이 중심이 되는 집단적 경제제재는 유엔헌장 7장 41조상의 비무력적 강제조치에 해당된다. 경제제재의 종류를 성격별로 분류하면 대상국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측면의 긍정적 제재(positive sanction)와 대상국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처벌측면의 부정적 제재(negative sanction)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후자인 부정적 제재를 의미한다. 한편 경제제재를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실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무역통제조치와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본통제조치를 비롯하여 항공기 및 선박의 취항과 이·착륙을 중단하는 교통·수송통제조치와 통신망의 단절 등이 포함된다.¹⁾

위와 같은 경제제재의 정의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대상국가에 대하여 사용하는 부정적 경제제재를 분류하면 크게 무역거래와 관련된 수단 및 금융거래와 관련된 수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1> 참조). 첫째, 부정적 경제제재 중 무역거래와 관련된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휘, 「북한의 경제난과 선택: 대북한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4), p. 5 참조.

수출금지(embargo)는 통상적으로 상대국에 대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나, 무역금지를 통칭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금지(boycott)는 상대국으로부터의 물품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증대(tariff increase)는 상대국으로부터의 물품수입시 관세를 증대시켜 상대국의 자국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차별관세(tariff discrimination)는 상대국으로부터의 관세와 상대국 이외의 국가들과의 관세를 차별화함으로써, 상대국 물품의 자국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이다.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의 철회는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에 의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차별없는 대우를 상대국에 대하여만 철폐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다. 요주의목록(blacklist)은 상대국과 상거래하는 회사들을 요주의 대상회사로 지정하여 이들 회사들의 상거래를 중단시키는 수단이다. 수출입할당(quota)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출입 중 일정품목에 대하여 수량적으로 제한하는 수단이다.

인가거부(license denial)는 특정품목의 수출입 허가를 상대국에 대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투매(dumping)는 상대국의 주요수출품목의 세계시장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상대국의 경제를 붕괴하려는 의도하에 특정품목을 생산가격이하로 국제시장에 판매하는 행위이다. 선매(preclusive buying)는 상대국에 중요한 품목을 국제시장에서 자국이 독점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상대국에 타격을 주는 행위이다.

둘째, 부정적 경제제재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수단은 다음과 같다. 자산동결(freezing assets)은 상대국 소유의 자국내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킴과 동시에 상대국의 자국 은행과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이다. 수출입통제(controls on import or export)는 상대국과의 수출입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이동을 통제하는 행위이다. 원조중단(aid suspension)은 원조의 감소, 중단 및 공여 지연 등을 통하여 상대국의 경제에 타격을 가하는 수단이다.

강제수용(expropriation)은 상대국 소유의 토지나 물품을 강제적으로 자국 소유로 수용하는 행위이다. 불리과세(unfavorable taxation)는 상대국 자산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이다. 국제기구분담금체납(withholding due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은 상대국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과거에 약속했던 분담금에 대하여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긍정적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이다.²⁾

2) David Baldwin,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pp. 40~44 참조.

<표 1> 부정적 경제제재의 예

무역거래통제	자본흐름통제
수출금지	자산동결
수입금지	수출입통제
관세증대	원조중단
차별관세(비우호적)	강제수용
최혜국대우 철회	불리과세
요주의목록 등재	국제기구분담금 체납
수출입할당	
인가거부	
투매	
선매	

출처: David Baldwin, *Economic Statecraft*, p. 41.

긍정적 경제제재는 상대국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거나, 경제적 동기를 약속함으로써 상대국의 행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 및 금융거래와 관련된 수단을 대별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첫째, 무역거래와 관련된 긍정적 경제제재는 다음과 같다.

차별관세(tariff discrimination)는 전술한 부정적 경제제재의 경우와는 반대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낮추어 줌으로써 상대국의 물품수입을 원활하게 하는 행위이다. 최혜국대우 부여는 부정적 경제제재의 경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최혜

국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시켜주는 행위이다.

관세축소(tariff reduction)는 상대국으로 부터의 수입품목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세를 낮추어 주는 행위이다. 직접구매(direct purchase)는 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행위이다. 수출입보조(subsidies to exports or imports)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이나 상대국으로의 수출품목에 대하여 자국이 보조를 공여하는 행위이다. 인가공여(granting licenses)는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허가하는 행위이다.

둘째, 금융거래와 관련된 긍정적 경제제재는 다음과 같다.

원조제공(providing aid)은 무상 또는 차관의 형태로 상대국에 대한 원조를 연장시키거나 확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투자약속(investment guarantee)은 자국 기업의 상대국 진출시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직접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행위이다.

기업금융확대(encouragement of private capital exports or imports)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금융 및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금융을 자국의 기업들이 확대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상대국과의 금융거래를 확대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有利課稅(favorable taxation)는 상대국에 대한 직접투자시 자국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수단이다.

<표 2> 긍정적 경제제재의 예

무역거래개선	자본흐름개선
차별관세(우호적) 최혜국대우 부여 관세축소 직접구매 수출입보조 인가공여	원조제공 투자약속 기업금융확대 유리과세

출 처: David Baldwin, *Economic Statecraft*, p. 42.

위와 같은 경제제재 수단은 정책결정자가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상대국의 태도 및 정책을 변화시켜 상대국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책결정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상대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 상대국 지도자의 지도력 약화 또는 강화
2. 상대국 정치체제의 변경
3. 상대국 대내외 정책의 변화
4. 상대국 국력의 약화 또는 강화
5. 자국이 선호하는 특정이데올로기의 확산

6. 전쟁 예방
7. 동맹관계의 유지 또는 확보
8. 상대국의 동맹국과의 관계 약화 또는 강화
9. 자국 또는 관련국가와의 전쟁상태의 종식 또는 약화
10. 상대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
11. 상대국 경제성장의 촉진 또는 저해
12. 상대국 경제체제의 변화
13. 상대국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보
14. 상대국의 제3국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견제
15. 상대국의 전쟁으로부터의 회복 속도 지연 또는 촉진

경제제재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1914~90년 기간 중 취해진 116건의 사례 중 41건만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제재의 성공률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냉전이후시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제재는 1990년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1991년의 구유고연방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

3) 이동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가능성과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6), p. 3; 이동휘 교수는 이와 같은 낮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냉전이후시대에 경제제재가 중요한 대외정책수단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냉전구조의 붕괴로 경제제재시 적대 진영으로부터의 거부권 행사나 밀반출입 등 부정적 개입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둘째, 교통·정보·통신수단의 발달과 환경, 마약, 난민 등 범세계적 문제의 대두로 인한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경제수단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민주화의 확산으로 군사력의 대외정책에의 사용은 가능한 한 회피하면서도, 필요지역에의 개입을 위한 저비용·저위험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가 가지는 유용성 등이다.

조치 및 1993년의 대앙골라 경제제재가 유엔을 중심으로 취해진 바 있다.

미국은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질서를 저비용, 저위험 (low cost, low risk) 상황하에서 유지하고자, 대외정책 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를 중요시하고 있다.⁴⁾ 따라서 참여와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은 경제제재를 강화 또는 추진하여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동시에 대적성국과의 관계에서는 포괄적 경제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약속하는 차원의 긍정적 경제제재를 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사 례: 미·베트남 관계개선과 경제제재 완화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냉전이후시대에 과거 적성국이었던 국가와의 관계개선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월남을 지원하여 과거에 월맹과 전쟁을 치룬 바 있으나, 냉전이후시대 국가전략의 변화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 사례는 접근방식이나 유형면에 있어서 북·미관계의 변화양상 및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를 전망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1945~1990년 기간중 취해진 60건 이상의 경제제재 중 2/3 이상이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3/4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위의 책, p. 4 참조.

미국은 1964년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이래 1975년 베트남 공산화이후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를 확대하였으며,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이 1989년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자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 완화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부시행정부 때인 1991년 4월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베트남은 이후 일련의 협상과정을 거쳐 1995년 2월 하노이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후, 1995년 8월 대사급 국교 관계정상화를 이룩하였다.⁵⁾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은 기본적으로 부시행정부하에서 수립된 4단계 항해도(road-map) 접근방식을 클린턴행정부가 이행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 항해도 접근방식은 베트남의 각 단계별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미국이 대베트남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이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

첫째, 1단계로서 베트남이 1991년 10월의 캄보디아 평화협정에 조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미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
- 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Vietnam: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Normalization of U.S.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1995) 참조.
- 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Vietnam-U.S. Relations: The Debate Over Normalization*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October 27, 1994) 참조.

베트남은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력하고, 미국과 관련된 억류자를 베트남에서 2년안에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미국은 뉴욕주재 베트남 외교관의 25마일 여행제한을 철폐하고,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베트남간 양자간 대화를 시작하며, 미국 단체여행단의 베트남 방문을 허용하며 대캄보디아 경제관계를 자유화한다.

둘째, 2단계로서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군 주둔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베트남은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 문제 해결에 대하여 계속 협력한다. 미국은 양국관계 정상화 회담을 위한 고위대표단을 하노이에 파견하며, 미국과 베트남간 통신망 연결, 미국 기업과 베트남간의 계약 체결 허용, 기본적 생필품에 대한 미국과 베트남간 상거래 허용,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베트남의 체불금 지불 지원, 미국 기업의 베트남내 사무소 설치 허가, 비정부차원의 대베트남 협력계획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조치한다.

셋째, 캄보디아의 안정을 위한 UN활동이 정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베트남은 캄보디아문제에 대한 캄보디아 평화협정을 준수하며,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완전 철수, 미군 전쟁포로 및 실종자 문제 해결, 미군 유해송환 등을 이행한다. 미국은 양국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무역금수조치의 전면해제, 기본적 생필품에 대한 국제금융기관들의 대베트남 원조회의 지원 등을 이행한다.

넷째, 4단계로서 캄보디아의 자유총선거 실시와 미군 전쟁포로

및 실종자 문제의 완전해결을 조건으로 미국은 대사급 수준 외교 관계 수립, 베트남에 대한 최혜국대우 부여, 기본적 생필품 분야 이외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등을 이행한다.

미국은 이와 같은 항해도 접근 방식에 근거하여 1991년 12월 베트남에 대한 관광금지를 해제한 데 이어, 1992년 12월 미 기업들의 베트남 사무소 개설 허용, 1993년 7월 베트남에 대한 여신 승인, 1993년 9월 미 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참여 허용, 1993년 12월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의 일부 해제, 1994년 2월 대베트남 금수조치의 전면 해제 등을 단계적으로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 과정을 분석하면,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 미국은 전쟁포로 및 실종자(POW/MIA) 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인도차이나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로서 캄보디아에서의 베트남군 철수 및 캄보디아 정부 수립이 미·베트남 관계개선의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서 여기에는 미국 이주 베트남인들의 친척, 친지 초청문제와 월남정부에 협조했던 정치범들의 석방문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하에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미국은 일본 및 유럽국가들이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단행함에 따라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이

익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미국 기업가들은 부시 행정부때부터 클린턴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베트남과의 경제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베트남은 베트남식 경제개방정책인 도이모이 정책을 실시하여 서방과의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는 성의를 보였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경제력이 확대되는 동시에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을 우려,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제Ⅲ장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와 관계개선 현황

1.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현황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가로 분류하여 대북관계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는 ① 북한을 테러국가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치, ②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조치 및 ③ 공산주의 국가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등이 있다(<표 3> 참조). 한편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 완화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와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의회와의 협조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 중 외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첫째, 북한의 유엔주재 외교관에 대한 25마일 반경밖의 여행 금지이다. 이 조치는 국무부가 FBI와 CIA의 협의하에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둘째, 경제관계 단절조치이다. 미국은 1950년 북한의 대남 침공에 대하여 미국의 수출규제령(Export Control Act)에 의거하여 1950년 6월 28일 대북한 금수조치를 취하였다. 미국은 또한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에 대응하여 국가비상사태시 적용할 수 있는 적성국 교역령(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거, 1950년 12월 17일 해외자산 규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을 발효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조치를 취

하였다. 이와 같은 대북한 경제관계 전면 단절조치는 대통령에 의하여 매년 연장될 수 있으며, 미 행정부는 동 규제조치를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셋째, 무역관련 조치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무역협정연장령(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에 의거, 1951년 8월 1일 이후 최혜국(MFN) 대우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조치는 북한이 자국민들의 해외이주를 허용한다는 대통령의 판단 또는 미국과 북한간 특정한 조항이 포함된 쌍무협정 체결에 의하여 폐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넷째, 국제적 테러행위 지원관련 조치이다.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는 국가로 분류하여 1988년 1월 20일 이후 수출행정령(Export Administration Act)에 의거, 북한의 군사력이나 국제적 테러행위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자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자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수출행정령에 의거한 규제사항 중에서 특정거래에 대한 금지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의 대공산국 관련 조치이다. 미국은 북한을 공산주의국가로 분류하여 해외원조령(Foreign Assistance Act)에 의거, 북한에 대한 원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일정기간 동안 동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여섯째, 인권관련 조치이다. 미국은 북한을 인권 침해국가로 분류하여 대북한 원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관인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과 ADB(아시아개발은행)의 이사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대북한 차관제공 등 금융지원을 금지할 수 있다.⁷⁾ 즉 이는 미국이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대북한 금융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29, 1994), pp. 21 ~36 참조.

<표 3> 미국의 對북한 제재조치

날 자	관련근거	제재조치내용
50. 6.28	수출규제령	대북한 수출금지
50.12.17	적성국 교역령 (해외자산통제규정)	미국내 북한 자산동결, 북한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금지하는 「해외자산통제규정」 발표
51. 9. 1	무역협정연장령	대북한 최혜국대우(MFN) 부여 금지
55. 8.26	국제무기거래규정	북한과의 방산물자 및 용역의 수출입금지
62. 8. 1	대외원조령	대북한 대외원조 제공금지
75. 1. 3	통상법(1974)	대북한 일반특혜관세(GSP)공여금지
75. 5.16	수출규제령	북한을 제재대상 국가그룹 Z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금수조치 실시
86.10. 5	수출입은행령	미국 수출입은행의 대북한 여신제공금지
88. 1.20	수출규제령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하여 무역, GSP공여, 군수통제품목상의 물품판매,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여신제공 금지. 국제금융기관에서 대북한 원조제공 결정 시 반대표를 던지도록 지시
88. 4. 4	국제무기 거래규정(개정)	국제 테러지원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대한 방산물자 및 용역판매와 수출입금지
92. 3. 6 92. 6.23	군수통제품목	이란 및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기술확산에 관여한 것으로 판정된 북한에 대해 군수통제품목 상의 품목에 대한 수출입 및 2년간 미정부 계약금지. 특히, 미사일, 전자, 우주항공, 군용기 생산제조와 관련된 북한 정부의 모든 활동에 대해 적용

자료: Zachary S. Davi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C.: CRS Report for Congress, November 29, 1994) 참조.

2.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완화과정: 대북 핵협상 중심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와 대북규제 조치는 1950년 북한의 대남침공에 대한 대북한 금수조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과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접촉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건과 상황변화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것이었다. 즉 국제적 이해 및 미국의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해진 것이었다.

반면 현재까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과정은 크게 두가지 계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첫번째 계기는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시기를 전후하여 취해진 조치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 제의에 대한 호응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의 대북유화조치는 미 외교관의 북한인과의 접촉 허용 및 인도적 차원의 대북한 수출 허용 등 비교적 포괄적인 측면에서 선언적·상징적인 성격이 강했다.

두번째 계기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접촉과 협상의 부산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 시기 미·북간의 접촉과 협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라는 명백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이 시기 미국의 대북유화책은 명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전과는 달리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대북한 핵협상은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북관계의 전반적인 변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미관계 변화 양상 및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 완화과정은 미국의 대북한 핵협상 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대북한 핵협상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1, 2단계 고위급 회담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발표하였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1992년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취소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결국 미국의 아놀드 캔터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의 김용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관에 1992년 1월 첫번째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고, 북한은 1992년 1월 30일 IAEA와 핵 안정협정을 체결하였다.

IAEA는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임시사찰을 실시한 결과, 북한이 보고한 내용과 사찰을 통한 분석 결과간에 「중대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IAEA는 영변에 소재한 2개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IAEA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후 북한은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 촉구결의안을 이유로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은 NPT 탈퇴 반복의 조건으

로 ①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 중지, ② 남한내 미군의 핵무기 및 핵기지 공개, ③ 북한에 대한 핵위협 해소, ④ IAEA의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 등을 제시함으로써 협상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동년 3월 29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NPT 탈퇴에 대응하여 유엔에서 결의한 회원국에 대한 핵문제 해결 촉진 권고⁸⁾에 근거, 1993년 6월 2~11일 뉴욕에서 미·북한간 제1단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제1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은 북한의 NPT탈퇴 유보선언을 유도하고 NPT체제 및 IAEA의 안전조치가 북한에 계속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IAEA 사찰 재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제1단계 고위급 회담에서 핵확산방지 목적에 부합되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을 지지할 것을 표명하였으며, 북한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NPT로부터의 탈퇴효력(the effectuation of withdrawal)을 일방적으로 정지(suspend)시키기로 하

8) 유엔 안보리는 제825호 결의를 통하여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하였다. ① 북한에 대해 1993년 3월 12일자 서한에 담긴 NPT 탈퇴 선언을 재고하고 NPT에 대한 이행의무를 재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② 또한 북한에 대해 조약상 핵무기 확산방지 의무를 준수할 것과 IAEA 이사회의 1993년 2월 25일자 결의안에 명시된대로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③ IAEA 사무총장에 대해 IAEA 이사회가 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계속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그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④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이 이 결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문제해결을 촉진시켜 나갈 것을 권유한다. ⑤ 안보리는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였다. 미국과 북한은 첫째,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의 불사용 및 불 위협 보장 둘째, 전면적인 핵안전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포함한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과 상대방 주권의 상호존중 및 내정 불간섭 셋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등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미국과 북한은 1993년 7월 14~19일 제네바에서 제2단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미국은 제1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NPT잔류를 수용했다는 전제하에 제2단계 회담에서는 IAEA 사찰문제 해결에 주력하였다.

제2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이 IAEA 사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IAEA와의 협상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의 NPT잔류가 기정사실화되었다. 동 회담의 공동보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제1차 미·북 고위급 회담 공동발표문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북한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서 현존 흑연 감속원자로와 그와 관련된 핵시설들을 경수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도입을 지지하며 이를 위한 방도를 북한과 함께 모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셋째, 양국은 IAEA 핵안전조치의 완전하고 공정한 적용이 NPT체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넷째, 북한은 핵안전조치와 관련된 현안문제 및 기타 문제들에 관한 IAEA와의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다섯째,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빠른 시일내에 남북회담을 시작할

용의를 재확인하였다. 여섯째, 핵문제 관련 현안 및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전반적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2개월내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IAEA의 대북사찰 및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않음에 따라 1993년 9월로 예정된 미·북간 제3단계 고위급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일련의 비공개 실무접촉(1993. 11. 24~12. 29)을 통해 IAEA가 북한의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임시·일반사찰을 재개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미·북한간 실무접촉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대북사찰이 지연되었다. 즉 IAEA 임시·일반사찰에 대하여 미국은 NPT회원국이 수용하는 전면적 범위의 임시·일반사찰로 해석하였으나, 북한은 NPT탈퇴 유보의 특수상황에서 핵안전조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제한적 사찰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북사찰의 지연으로 UN안보리의 제재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북한은 1994년 2월 15일 IAEA에 7개 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미·북 실무접촉이 재개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뉴욕에서 가진 실무접촉 결과를 합의문 형식으로 1994년 2월 25일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3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시에 추진한다. 첫째, 미국은 한국의 1994년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결정에 동의한다. 둘째,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하여 북한과 IAEA간에 2월 15일 합의된 사찰을 실시한다. 셋째,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판문점에서 재개한다. 넷째, 미국과 북한은 제3단계 미·북 회담을

1994년 3월 21일 제네바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IAEA의 연속성 사찰 결과, 핵안전조치의 연속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남북 특사교환이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3월 21일로 예정되었던 미·북간 3단계 회담은 개최되지 않았다.⁹⁾

북한측의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의 불바다 발언사건과 국제공조체제에 의한 대북제재에 의하여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씨가 6월 15일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개인적 자격으로 회담을 가졌다. 카터 전 미국대통령은 북한 방문후 김영삼 대통령에게 김일성의 정상회담 개최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김 대통령이 즉각 수락함으로써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1994년 8월 25일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3단계 고위급 회담

미국은 김일성이 카터 전대통령을 통하여 핵개발 동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7월 8일 제네바에서 미·북 3단계 회담을 재개하였

9) 북한 핵문제 관련 미·북한간 협상 및 북한의 의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25, 1994); Larry A. Niksch, *CRS Issue Brie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bruary 16, 1994) 참조.

다. 그러나 김일성이 7월 8일 사망함에 따라 미·북 3단계 회담은 하루만에 연기되었으며,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8월 5~13일 개최된 3단계 1차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첫째, 북한은 흑연감속로들과 연관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로 교체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2백만kw 발전능력의 경수로 발전소들을 북한에 제공하며, 그 동안 북한에 흑연감속로들을 대신할 대체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제공조치에 대한 미국의 담보를 받는 대가로 5만kw, 20만kw 발전능력의 흑연감속로들의 건설을 동결하고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소를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밑에 두기로 하였다.

둘째, 북한과 미국은 정치·경제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서 각기 상대방의 수도에 외교대표부를 설치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용의를 표명하였다.

넷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의 회원국으로 남아있으며 조약에 따르는 안전협정의 이행을 허용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미국과 북한은 전문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3단계 2차회담을 1994년 9월 23일 제네바에서 재개하여 10월 21일 기본합의문에 서명하였다.

다. 기본합의문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을 전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합의문의 내용이다.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① 경수로 지원 조항, ② 관계개선 조항, ③ 한반도 비핵화 조항, ④ NPT체제 유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클린턴 대통령은 10월 20일 김정일 에 대한 친서를 통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을 북한측에 약속하였다.

첫째, 기본합의문 중 경수로 지원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2003년까지 북한에 2,000MWe에 상당하는 경수로 건설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미국은 국제컨소시엄을 대표하여 6개월안에 북한과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한다.

미국은 북한의 흑연감속로 건설 중단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첫번째 경수로 완성시까지 대체에너지를 공급한다.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로 한다. 대체에너지의 공급은 3개월안에 개시하며, 연간 50만톤까지 공급하기로 한다.

북한은 경수로 지원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접수되는 즉시 흑연감속로 가동을 중지하며, 궁극적으로는 흑연

감속로와 부속시설들을 해체한다. 북한은 흑연감속로 가동을 1개월안에 동결한다. 북한은 IAEA가 핵동결을 감시하는 데 협조한다. 흑연감속로의 해체는 경수로 건설이 완성되는 시점에 완결한다. 미국과 북한은 5MW 실험용원자로에서 추출된 폐연료봉의 안전한 저장방법을 강구하며, 경수로 건설기간 중에 폐연료봉을 폐기하도록 한다.

미국과 북한은 경수로 지원과 대체에너지 제공문제 관련 전문가 회담 및 폐연료봉의 처리와 폐기 관련 전문가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한다.

둘째, 관계개선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합의문 서명후 3개월안에 양측은 금융거래 및 통신을 포함한 투자와 무역상의 장벽을 낮추기로 한다. 양측은 영사 및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회담을 개최하여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해결이 진전될 경우, 미국과 북한은 양자관계를 대사급까지 격상한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협조한다. 미국은 대북한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을 공식적으로 확약한다. 북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북한은 본 합의문이 남북대화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남북대화를 재개한다.

넷째, NPT체제 유지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측은 NPT체제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북한은 NPT체제의 일원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안전협정의 이행을 수락한다. 경수로사업의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IAEA의 동결시설을 포함한 부대 시설에 대한 임시 및 일반사찰을 재개한다.

경수로 지원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시점, 즉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이전에 북한은 IAEA와의 안전협정에 근거하여 북한내의 모든 핵시설과 북한의 핵시설 관련 초기보고서에 대한 정확도 및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완전한 사찰이 이행되도록 한다.

기본합의문은 17개월간의 미국과 북한간 회담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미국은 가칭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라는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약 40억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건설비용을 지원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상기금액 중 약 55%에 달하는 금액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 그러나 기본합의문 중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과 관련된 조항에는 관계개선의 속도를 자세하게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1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p. 8 참조.

3.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완화 내용

가. 기본합의문 이전

미국은 서울올림픽 직전에 북한에 대하여 올림픽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일련의 유화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미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에 호응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제의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완화시킨 바 있다. 미국은 미 외교관이 북한인사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고, 북한의 非公式·非政府 인사가 학술 및 문화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국 시민의 친지 방문 및 학술·문화 행사 참가를 위한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사안별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한 수출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¹¹⁾

이에 따라 미국은 1989년 해외자산 규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s)의 일부 개정을 통해 체육, 학술, 문화 등 비상업 분야에서의 미국 여행사에 의한 개인 또는 단체여행 주선을 허용하였으며, 수출행정령(Export Administration Act)의 일부 개정을 통해 식량, 의약품, 의료기재 등 인도적 물품의 대북한 수출을

11) Daniel Russel, "U.S.-North Korean Relations,"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orean-U.S. Relations: Korean-American Dialogue*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1993), p. 49; 김정우 의,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정책과 동북아질서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61 참조.

허용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 유화조치에 따라 1988년 12월부터 미국과 북한은 북경에서 참사관급 접촉을 시작하였으며, 고위급회담 이전까지 33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①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 ② IAEA와의 안전협정 체결, ③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반환, ④ 테러행위 중지, ⑤ 인권 상황 개선, ⑥ 미사일 및 관련기술 수출 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에게 ① 주한미군 철수, ② 남북한의 상호감군, ③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④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⑤ 북·미간 직접 대화 및 관계개선, ⑥ 미군 유해송환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의 등을 주장하였다.¹²⁾ 이에 대하여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남북한 쌍방이 원한다면 남북대화에 미국이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위와 같은 미국의 유화조치에 대하여 1990년 5월부터 208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에 89만달러를 지불하였다.¹³⁾

12) Richard H. Solomon, "The Last Glacie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st-Cold War Era," (미 하원 외무위 동아·태 소위원회, 1991. 2. 11), p. 107; 길정우, "북·미관계와 한국: 과거, 현재와 미래,"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관계와 미국」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1 참조.

13) 미국은 유해송환 관련, 북한에 한구당 2천달러에서 3천달러를 보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3만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pp. 1~7 참조.

나. 기본합의문 이후

미국은 기본합의문의 이행구도에 따라 1995년 1월 20일 대북한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신 및 정보: 미국과 북한간에 전화통신 연결에 관련된 거래, 개인적 여행의 신용카드 사용 및 기타 여행 관련 거래를 허용하고, 언론인들의 지국 개설도 허용한다.
2. 재정 거래: 미국에서 시발되거나 종결되지 않는 거래를 결제하기 위하여 미국 은행체계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3. 무역 거래: 미국 제철업소에서 내화물질로 사용되는 마그네사이트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4.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를 허용한다. 경수로 사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참여, 대체 에너지 공급, 폐연료봉 해체 등 미국과 북한간 기본합의문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법규에 맞추어 케이스별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는 미국의 국내법 개정

이나 의회의 동의없이 행정부 단독 결정으로 가능한 초보적 단계의 조치로 평가된다. 따라서 미국의 포괄적 대북한 경제제재는 아직도 유효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표 4> 미국의 對北제재조치 현황

제재조치 내용	관련근거	제재 변경절차	비고
▶대북 수출금지 (인도적 물품·출판물·4백달러 이하 선물제외)	수출관리법	행정부 정책 사항(상무부)	△
▶대북 금융거래금지 -수출입은행 보증·보험·여신 제공금지 -미은행 이용금지 -대북투자 금지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적성국교역법 수출입은행법 대외원조법	행정부 정책 사항(재무부)	× △ △ △
▶대북수입 금지 (출판물·1백달러 이하 선물제외)	적성국교역법	행정부 정책 사항(재무부)	△
▶북한 여행제한 -하루경비 2백달러 미만 -신용카드 사용불가 -특정목적 여행시 국무부협의 -영리목적 여행주선 불가			○ ○ × △
▶테러지원국 제재 -교역·방산물 판매에 수출입 은행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 차관반대	수출관리법 등	행정부 정책 사항(국무부)	× ×
▶공산국 제재 -최혜국대우·원조·일반특혜 관세혜택 금지	적성국교역법 대외원조법	의회의 법개 정 조치필요	×
▶미사일수출통제규정(MTCR) -방산물자 교역금지	위반국 수출관 리법 등	행정부 정책 사항(국무부)	×
▶대북한 무기금수	국제무기거래 규제법	행정부 정책 사항(국무부)	×
▶화물수송 금지 -미국적 항공기·화물선의 북한 출입금지			△
▶유엔주재 북한외교관 행동범위 -뉴욕반경 25마일제한		행정부 정책 사항(국무부)	×

* 비고란의 ○는 해제, △는 부분해제·완화검토, ×는 제재유지
자료: 「중앙일보」, 1996년 5월 3일.

미국은 현재 북한을 수출규제령(Export Control Act)에 의거,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미국산 상품 및 기술의 대북한 수출 금지에 해당되는 Z국가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대북한 수출과 관련, 출판물 및 일반화된 기술자료 및 4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선물용 식품과 비군수용 의류 및 의약품 등 상무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을 예시하였다. 즉 출판물, 필름, 포스터, 음반, 사진, 소액 선물 등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시 미국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다.

여행과 관련, 미국시민권자 개인의 북한 여행시 정부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여행과 관련된 대금 결제를 위한 미국 은행 발행 신용카드의 사용이 허가되었다.

금융거래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제3국과 달러에 의한 국제거래 결제 목적으로 미국 은행 이용을 허용하였으나, 미·북간 직접 금융거래는 계속 불허하고 있다. 또한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의 해제는 동 자산이 북한 또는 북한의 해외기업이 아닌 송금자에게 향하는 경우에만 반환이 허용되도록 하였다.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 미국은 사무소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사무실 임차료, 전화 사용료, 현지 고용인 급료 등 자본거래는 허용하기로 하였다. 즉 미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적성국 교역령(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적용하여 북한과의 모든 상업 계약 체결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기거래규제령(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의거 대북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외국원조규제령(Foreign

Assistance Control Act)에 의거 대북한 원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수정법안에 의거하여 다자간 기구로부터의 대북한 차관에 대한 지지도 제약하고 있다. 한편 핵에너지(Atomic Energy Act)와 핵비확산령(Nuclear Non-Proliferation Act)도 북한에 대한 핵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대북한 규제는 어느 것도 쉽게 해제되리라고 보기 어렵다.¹⁴⁾

한편 미국 행정부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견제하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도 있었다.¹⁵⁾ 즉 미국 의회는 1995년 9월 18일 미·북 관계개선에 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통하여 행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견제하였다. 그 내용은 남북대화,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전진 배치된 북한군의 후방 배치,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지 등의 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한, 미국과 북한간 관계를 연락사무소 이상 수준으로 진전시키지 말고, 대북 무역 및 투자장벽 완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KEDO에 제공되는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1995년 9월 21일 미국 의회는 KEDO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북한이 3개월내에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국 회사를 주계약자로 하는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KEDO에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출하려면 남북한간 자유로운 여행 및 통신의 보장과 남북 불가침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

14) 스티븐 위크먼, “북미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통일경제』, 7호 (1995년 7월), pp. 36~40 참조.

15) 박영호,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통일경제』, 제14호 (1996년 2월), p. 19 참조.

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의회의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행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을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견제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Ⅳ장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전망

1.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의 시사점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의 속도와 수준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분석한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 과정과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위하여 미·베트남 및 미·북한간 관계개선의 배경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은 1980년대부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였으나,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침공 및 주둔으로 인하여 양국관계는 개선되지 못하였다. 베트남은 대미 관계개선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캄보디아 주둔군의 부분철수를 단행하였으며, 실종미군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편 구소련의 몰락으로 조성된 인도차이나반도의 힘의 불균형상태는 미국으로 하여금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미·베트남 관계개선의 배경요인 분석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면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미국과 북한간의 접촉은 미국이 냉전이후시대 동북아지역의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북한도 베트남과 같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탈피와 경제난 극복의 촉매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대베트남 및 대북한 관계개선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해결이 어려운 장애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무부의 정규요원에 의한 정상적 채널보다는 의회나 분야별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 협상에서도 실무적 문제와 중요 정치적 문제가 구분되어 실무적 문제는 국무부의 정규요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협상의 고비마다 돌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의 해결은 사안별 전문가나 의회의 인물을 기용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미국은 적대국과의 관계개선에 있어 사안별 중요도를 우선순위에 따라 설정하고, 상대국의 사안별 약속이행을 단계별로 확인한 후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의 경우에는 실종미군의 처리문제와 캄보디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베트남이 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이 미·베트남 관계개선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서는 북한 핵개발의 동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북한이 핵개발 동결에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셋째,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의 경우 베트남의 직접적인 분쟁상대인 캄보디아와의 갈등 불식, 즉 캄보디아에서의 베트남군 철수가 중요변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

에 있어서도 북한의 대남한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과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모색하지 않는 한,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의 속도와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베트남 및 대북한 관계개선 추진의 차이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 추진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미국 기업인들의 대정부 압력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미국 기업들이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을 크게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미 기업인들의 대정부 압력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즉 냉전이후시대 전세계적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이라는 흐름에 따라 동구권 및 동남아시아 지역 등 미국 기업들이 투자할 지역은 넓어진 반면, 국제적 신용도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북한의 경우, 최적지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미국기업들의 경향에 비추어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의 수준과 폭도 북한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북한 자체의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둘째, 미국의 대베트남 관계개선 과정에서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이 앞당겨진 결정적 이유중 하나는 베트남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가입이었다.¹⁶⁾ 즉 미국은 베트남의 ASEAN 가입

16) 미국은 베트남의 동남아국가연합 가입이 1995년 7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동년 7월 11일 양국간 관계 정상화를 서둘러 발표하였다. Brantly Womack, "Vietnam in 1995: Successes in Peace," *Asian Survey*, vol. XXXVI, no. 1 (January 1996) 참조.

으로 인해 베트남이 국제무대의 틀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미국과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이 중국의 인도지나반도로의 팽창을 견제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에서는 이러한 주변국의 결정적 기여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미국과 베트남간의 관계개선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가 이미 정상화된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이와 반대로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촉매제가 되어 일본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미·베트남 관계개선 과정에서, 베트남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며 성실한 자세를 보인 것도 관계개선을 앞당기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지만,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대국과의 관계개선 협상에서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협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미국은 대북한 관계개선을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반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모든 문제해결의 돌파구라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관계개선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미국의 대베트남 및 대북한 관계개선은 양국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양국의 미국과의 관계개

선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의 견제를 염두에 두고 양국간 관계개선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중국이 공히 자국의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과거 적대적이었던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혈맹관계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미·중관계가 계속적으로 혼미한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미·북한 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계속 무조건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며,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불편한 상대인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급속히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의 전제조건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치 및 경제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5년 1월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를 완화한 바 있으나, 첫번째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조치된 것으로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향후 미·북 관계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보다 포괄적으로 추진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한국전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의 발굴 및 북한의 미사일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4월 16일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는 북·미관계 개선속도와 맞물려 추진될 것이며, 이는 몇가지 선결조건, 즉 ① 기본합의문의 성실한 이행, ② 실종미군 및 미사일 회담의 원만한 진행, ③ 북한의 4자회담 수락 및 추진, ④ 남북관계 개선 등 미·북한간 현안의 해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 기본합의문 이행

기본합의문의 이행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개발의 동결과 대북한 경수로 공급이며, 이는 미국의 대북경제완화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미국과 북한은 기본합의문의 구도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고 폐연료봉의 봉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북한 경수로 공급협정도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목표시한인 1995년 4월 21일은 넘겼지만, 결국 1995년 12월 15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체결되었다.¹⁷⁾

17) 대북한 경수로 공급협정은 북한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거부함에 따라 지연되었으나, 미국과 북한간 칼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용하였다. 즉, 미국과 북한은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한국형 경수로 2기를 제공하도록 설립협정문에 명시된

이후 KEDO와 북한은 「KEDO의 법적 지위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KEDO와 북한간의 통신의정서」 및 「KEDO와 북한간의 통행의정서」에 합의하였다. KEDO는 한전을 대북 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로 공식 선정하였으며, 북한의 함경남도 신포지역 부지에 대한 부지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북 경수로 공급사업이 진전을 보였다. 한편 북한은 잠수함사건 및 3자회담 설명회와 관련한 대미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속셈으로 핵개발 동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⁸⁾ 미국의 대북 관계개선 우선순위가 북한 핵개발 동결에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북한은 언제라도 핵개발 동결약속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실종미군 및 미사일 회담

미국은 실종미군의 유해 송환문제가 인도적 문제인 동시에 국내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북한에 대하여 한국전 당시 실종된 미군의 유해 발굴을 위하여 북한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완화 조치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미 북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전성훈, “북한 핵 문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군사논단」, (1996년 8월) 참조.

18) 북한은 미국이 대북한 경수로 공급 및 중유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핵개발 동결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위협하고 있다.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16, 1996.

한은 1993년과 1994년에 미국에 인도된 162구의 유해 송환 대가로 400만달러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미국은 200만달러를 제시함으로써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¹⁹⁾

한편 미국은 유해송환 협상의 대표로 제임스 월드(James Wold) 국방부 실종미군·전쟁포로(POW/MIA) 담당 부차관보를 임명하였다. 이는 북한이 외교부의 김병홍 국제기구 국장을 대표로 임명한 것을 볼 때, 미국은 유해송환 및 발굴문제를 실무적·실질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은 동 문제를 정치화할 기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공동조사단의 구성 및 유해송환 대가 등의 문제에서 미국에 대해 정치적·경제적으로 과도한 양보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실종미군의 유해발굴 조사 및 송환도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수출 통제와 관련된 문제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 완화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 수출이 중동지역 평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통제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계속 진전될 경우 사정거리가 확장되어 일본 뿐 아니라 하와이까지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안에 포함되는 것을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 개발은 전세계적 대량살상 무기 감축 및

19) 미국은 한국전 당시 실종된 8,100명의 미군 가운데 유전감식법을 이용하면 3,500구 이상의 유해 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길정우, “미군 유해 송환 협상과 미사일 회담,” 『통일경제』, (1996. 4) 참조.

미사일기술의 통제를 세계전략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 수출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중동 미사일 수출을 중요한 경화수입원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측에 대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 대가로 경수로를 공급하기로 한 기본합의 이후 재정적 부담의 대부분을 한국이 지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포기에 대한 대가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²⁰⁾ 즉 미·북간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한국측이 북한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 4자회담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① 한반도 평화문제와 미·북 양자간 대화문제 분리, ②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 추구의 남북한 주도, ③ 미국과 북한간 평화체제 관련 협상 불가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 북한, 중국 및 미국 대표간의 4자회담을 아무

20) 위의 글 참조.

런 전제조건 없이 제의한 바 있다. 즉 4자회담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 및 평화구도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의 조건이 되어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관련국이며 한반도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과 대화통로를 유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4자회담 제의는 미국의 대북협상은 진전되고 있는 반면, 남북한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나온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 제안 이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북한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회담 개최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하여 긍정·부정도 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이 참여하는 대북한 3자설명회를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 북한은 잠수함 사건에 대한 한국측의 강력한 사과 요구에 직면하여, 3자설명회 수락과 동시에 3자설명회시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표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²¹⁾ 그러나 북한 3자설명회를 수용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4자회담으로 연계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남한배제 전략에 기초하여 4자회담의 즉각적 수용보다는 이를 되도록 지연시킴으로

21) 북한의 잠수함 사건 사과 수위와 관련, 북한이 남한의 대북 쌀 지원시 수송선에 대한 인공기 강제계양 사건 당시 표명했던 수준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한·미 양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앙일보」, 1996. 12. 9.

써 미국으로 부터 보다 많은 정치적·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라.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문제는 기본합의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북한간 합의의 일부라 할 수 있으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개발 동결상태 유지 및 핵시설의 궁극적 해체가 대북관계의 우선순위에 두어져 있고, 북한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당장에 남북관계 개선을 북한에게 강요할 적절한 수단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 및 경제제재 완화의 직접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라 할 지라도 북한 핵개발 동결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수로 사업의 진전을 위해서는 한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은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대화 재개를 도의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북한 잠수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한국내 대북 강경분위기로 인하여 KEDO의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4자회담의 추진 및 경수로 공급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촉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전망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의 수준과 폭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양한 조건의 충족 여부와 대베트남 관계개선 사례의 시사점에서 지적인 미국의 입장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의 핵동결에 관한 약속이행과 연계된 단계별 추진 원칙과 대북한 부정적 이익의 점진적 최소화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될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미국과 북한간 현안문제인 기본합의문 이행, 실종미군 회담, 미사일 회담, 4자회담 등 주요 문제들의 진전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수준과 폭이 결정될 것이다.²²⁾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추가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단계: 기본합의문 명시사항 이행

제1단계 부분적 완화조치는 이미 취해진 상태로 미국과 북한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기

22) 이와 관련, 미국은 1995년 1월 20일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 경우에도 미국의 국익을 전적으로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은 중국과 북한이 마그네사이트의 주생산지라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마그네사이트 수입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업의 북한과의 접촉이 자유스러워졌으며, 인도적 목적에 의한 북한에 대한 기부금 모집 및 전달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미국의 AT&T 전화회사는 1995년 4월 북한과의 전화를 연결하였으며, 미국 재무성은 북한의 미국내 동결자산을 부분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간 무역은 아직도 미국 재무성의 허가사항이므로 한정된 액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유화조치 수준은 북한의 대미태도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나. 제2단계: 제한적 경제관계

미국의 제2차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이 4자회담 수용 및 미·북한간 실종미군과 미사일 회담의 진전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무역관계를 제약하는 제반 제재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내 북한 자산동결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동결 해제 조치는 북한이 미국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은 수출물품의 압류 등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이므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제한적이거나 미·북간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직접투자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우선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경우와 같이 경제논리에 합당한 품목의 양국간 무역을 추구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실

질적 무역은 미국의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미국 기업들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나 대북한 수출에 관심이 있어야 실질적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단계에서 미국은 점진적으로 대북한 수출 및 수입 허가제 상한액수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미국과 북한간 무역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은행거래 및 선박의 입출항 등을 자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제3단계: 경제관계 확대

미국의 제3차 경제제재 완화는 기본합의문의 이행과 관련 KEDO의 대북한 경수로 공급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시점, 즉 핵심 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리 말하면 이 단계에서 미국의 추가적 경제제재 완화는 대북 경수로 공급사업, 북한의 미사일수출통제기구(MTCR) 가입 및 남북관계 개선 등 실질적 진전이 이룩될 경우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기 위해서 북한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므로 추가적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불가피하며,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제한도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적 개방·개혁이 진전된다면, 미국은 대북한 직접투자를 포함한 북한과의 전면적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제4단계: 경제관계 정상화

마지막 단계는 미국이 전술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어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관계정상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미국과 북한간 경제관계가 정상화되어 모든 무역 및 자본거래가 여타의 국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국제무역의 틀 속에서 운용되도록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관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제 V 장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1. 북한의 개방에 미치는 영향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농산물 수확의 지속적 감소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으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경제난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역시 북한 경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북한의 급변사태가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연착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조치가 단계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취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기본합의문의 이행구도에 따라 취한 제1차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비록 초보적인 것이었지만, 미국과의 직접 전화연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마그네사이트의 대미 수출은 북한의 경화수입에 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보다 큰 폭으로 추진될 경우,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첫째,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는 일본의 대북 경제관계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북 관계개선에 수반하여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일 관계개선과 이에 따른 일본의 대

북 배상금지불은 북한 경제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열도의 지리적 근접성과 니이가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일본 서해안지방의 대북 투자열기를 감안할 때,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시기를 전후하여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투자 및 무역 확대는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대북 투자 및 무역 확대는 과거 일·북 경제관계가 조총련을 중심으로 평양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형태를 탈피하여, 나진·선봉지역을 비롯한 북한의 동해안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의 국제적 신용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북한을 새로운 시장 또는 투자대상지로 간주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서방국가들이 대북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이나, 서방국가들은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유입될 것을 예상하여 북한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그만큼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고 대북 경수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제고될 것이다.

넷째,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해외투자유치와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다. 북한은 경

제개방정책에 따른 역효과를 두려워하고 있으나, 유엔이 주관하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따라서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의 순조로운 발전은 북한의 경제 개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완화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은 상대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경제 개방과 개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경제제재를 대규모로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경제 개방 및 개혁이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경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이 경제를 개혁·개방하지 않는 한 미국의 본격적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있을 수도 없으며, 설령 완화조치가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이를 볼 때 북한 역시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긍정적 효과가 인식될 때에는 북한내 개방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의 입지 강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개방파의 입지강화는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북한 경제의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크

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건들이 여러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가 완화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남북관계 역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북한에 의한 4자회담의 수락은 한반도의 평화를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남북한이 논의하는 최초의 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본 합의문의 구도에 따른 KEDO의 활동은 남한 기술진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장을 열어주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므로, 경제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재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고비마다 미국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대북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 역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남한을 무조건 배제하는 기존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가 보다 넓은 폭으로 취해질 경우 북한은 전술한 바와 같은 일본 및 대서방세계와의 경제관계 확대를 기대하고 단기적으로 남북간의 경제관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게 되고, 북한이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이용한 경제난 타개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남북간의 경제관계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또한 KEDO의 활동을 통한 남북한 기술 인력의 교류 확대는 북한이 남한과의 교류·협력이 자국의 경제난

타개와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기업이 대북 진출을 모색하는 경우, 이들은 우선적으로 서울주재 사무소를 창구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 그 국가의 문화와 언어 등 관습에 익숙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즉 대북진출 경우에도 다국적기업은 서울주재 사무소를 이용하는 한편 남한 기업과의 공동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은 서방국가들의 대북진출을 저해한다는 것을 북한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 사업에서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3. 한국의 대응

한국은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가 단계적·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과 북한이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철저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평화정착 사안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단계별로 연계시키는 단·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2단계 경제제재

완화는 북한의 4자회담 수락 및 기본합의문의 성실한 이행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미국측에 북한이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경제제재 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이 경제제재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이 한반도 안정 및 미국의 연착륙정책 수행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미국측에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없는 추가적 경제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이 전제되지 않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북한 독재정권 연장에 긴요한 경화수입을 높여주는 효과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제재 완화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 자체의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다.

셋째,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이 진전될 경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밝혀졌듯이 동독 경제는 서독 및 서방경제의 평가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북한 경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경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경제기구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경제통계 자료를 상세히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만이 북한 경제회생의 진정한 돌파구이며, 북한을 동포애적 차원에서 반대급부 없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한국뿐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한국은 대북 지원이 북한 독재정권의 연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미·일을 포함한 전세계적 대북 지원의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과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전반적 경제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통일한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차지할 지정학·지정학적 중요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북 경제관계 확대정책을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길정우 외.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동북아정책과 동북아질서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동휘.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가능성과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6.
- _____. 「북한의 경제난과 선택: 대북한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4.
- Baldwin, David. *Economic Statecraf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29, 1994.
- _____.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anuary 25, 1994.
- _____. *Vietnam: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Normalization of U.S.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1995.

_____. *Vietnam-U.S. Relations: The Debate Over Normalization.* Washington, D.C.: The Library of Congress, October 27, 1994.

Niksch, Larry A. *CRS Issue Brie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bruary 16, 1994.

2. 논 문

길정우. “미군 유해 송환 협상과 미사일 회담.” 『통일경제』, 제16호 (1996. 4).

_____. “북·미관계와 한국: 과거, 현재와 미래.”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관계와 미국』.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박영호.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통일경제』, 제14호 (1996년 2월).

스티븐 위크먼. “북미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통일경제』, 7호 (1995년 7월).

전성훈. “북한 핵문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군사논단』, (1996년 8월).

Russel, Daniel. "U.S.-North Korean Relations."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orean-U.S. Relations: Korean-American Dialogue*.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1993.

Solomon, Richard H. "The Last Glacie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st-Cold War Era." (미 하원 외무위 동아·태 소위원회, 1991. 2. 11).

Womack, Brantly. "Vietnam in 1995: Successes in Peace." *Asian Survey*, vol. XXXVI, no. 1 (January 1996).

3. 기 타

「중앙일보」.

The Washington Post.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
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 96-10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안보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協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일본총선 결과분석
- 96-09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개 완화와 남북한 관계

研究報告書 96-20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1-4304
印刷處 성진문예사 전화 : 273-5577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